

2022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공고

중소벤처기업부(이하 '중기부')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이하 '소진공')은 스마트기술을 도입하는 소상공인 스마트상점을 육성·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스마트 상점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2년 4월 8일

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

1. 모집개요

- (목적)** 소상공인 사업장에 키오스크, 서빙로봇, 스마트 미러 등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
- (지원기간)** 선정일 ~ '22. 12월
- (지원대상)** 「소상공인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*으로,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
 - * 독립점포,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

<지원 제외 대상>

- 스마트상점 지원 제외업종[참고 2]
- 신청일 현재 휴·폐업 중이거나,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
- '20~'21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통해 지원을 받은 상점
- '22년 스마트상점 및 업종별 협단체를 통해 지원받을 예정인 상점
-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사업(온라인 장보기) 등을 통해 스마트오더가 보급된 점포는 스마트오더 지원 불가

(지원규모) 총 1,500개 점포 내외

구분	특징	지원금액	지원규모
일반형	○ 중점 지원기술 1개 이상 을 도입하는 매장	공급가액의 70%, 최대 5백만원	1,490개 내외
선도형	○ 중점 지원기술 2개 이상 도입하는 매장 * 단, 로봇기반기술 도입 시 소진공과 협의하여 1개 기술 도입 가능 ○ 도입 이후 모델숍으로 활용하여, 소상공인들의 현장체험 등으로 활용 협조 필수 ○ 선도형으로 신청하였으나, 미 선정 시 일반형으로 자동 지원되어 일반형 평가 대상에 포함	공급가액의 70%, 최대 15백만원	10개 내외

* 스마트상점가 및 협단체 선정 규모에 따라 지원규모 변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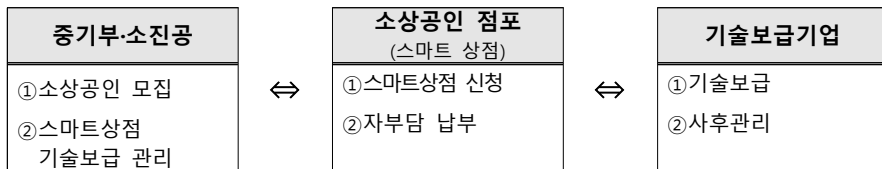
- (지원내용)**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서비스·경영방식을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**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**
 - 국비지원금은 일반형 최대 500만원, 선도형 1,500만원까지 지원
 - * 지원금액은 공급가액 기준 70%이며, 정부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과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 부담
 - 소상공인 점포는 소진공이 제공하는 스마트기술 보유기업 풀(Pool)*에서 희망기술을 선택
 - * 풀에 등록되지 않은 기술 및 기술기업 선택 불가(구체적인 희망기술은 최종 선정된 이후 선택 가능)
 - *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가맹본부의 정책상 도입필수인 기술은 지원 불가
- 단, **스마트화와 관련성이 적은 기초기술** 단독도입 지원은 불가하며, **중점 지원 기술과 복합 도입**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
 - * (예시) 키오스크 + 스마트 메뉴보드(사이니지) + QR오더 복합신청 → 지원가능
디지털 메뉴보드(사이니지) 단독 신청 → 지원불가

< 지원가능 스마트 기술 종류 >

기술분류	기술분야	세부분류
중점지원기술	VR · AR	가상빔팅
		스마트글라스
		스마트미러
	3D	3D풋스캐너
		3D프린터
	AI · IOT	사용자맞춤시스템
		사용자분석시스템
		무인시스템(무인판매기)
		안면인식시스템
	키오스크	키오스크
기타	무인로봇	
	경영효율화서비스	
테이블 오더	테이블오더	
기초지원기술	스마트오더 (QR 기반)	스마트오더 QR 기반
	스마트오더 (앱 웹 기반)	스마트오더 앱 · 웹기반
	스마트오더 (태블릿 기반)	스마트오더 태블릿 기반
	사이니지	DID
		LED 영상 전광판
		디지털메뉴보드
		웨이팅보드
		빔프로젝터
	기타	전자가격표시기
		LCD 전자철판
스마트멀티터치테이블		

* 기술별 상세내용은 "기술종류 설명자료" 파일 참고

스마트기술 보급 체계



2. 신청방법

- (신청기간) '22. 4. 8.(금) ~ 5. 13.(금) 18시까지
- (신청방법)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홈페이지(www.sbiz.or.kr/smst/index.do) 또는 이메일(smart@semas.or.kr) 접수
* 메일제목 : (개별점포 신청) 업체명-대표자명
- (선 정 일) '22. 6월 중 예정(변경 될 수 있음)
 - 소진공 홈페이지(www.semas.or.kr)를 통해 최종 선정결과 공지

3. 평가방법

- (평가절차) 서류평가 → 최종심의 순으로 평가하여 스마트 상점 선정
* 필요 시 현장평가가 진행 될 수도 있음
- (평가기준) 사업 이해도 및 기대효과, 사업수행 계획 및 추진의지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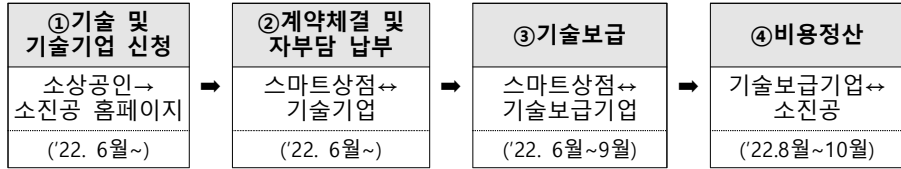
< 서류평가 항목 >

평가항목	세부평가 내용	점수
의지 및 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표자의 문제의식 및 점포 개선 의지 ○ 점포의 장점 및 경쟁력 정도 ○ 스마트상점 사업에 대한 이해도 	20
스마트기술 도입 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입 희망 스마트기술에 대한 이해도 ○ 스마트기술 도입이 필요한 이유의 적정성 ○ 소상공인 업종/경영환경(매장크기, 위치 등)과 신청 기술과의 적합성 	35
스마트기술 활용방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스마트기술 활용계획 수립 여부(추가적인 마케팅 등의 실행 계획 등) ○ 스마트기술 활용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○ 스마트기술 도입을 통해 목표하는 성과 달성 가능성 ○ 스마트기술을 통한 점포의 경쟁력 및 자생력 강화 가능성 	35
사후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스마트기술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사후관리 수립 여부 ○ 자료 업데이트 비용, 유상유지보수 비용 부담 등 추후 소요 되는 비용 등에 대한 계획 	10

(최종심의) 업종별 분포, 스마트 기술 분포 등을 고려하여 최종심의

4. 선정 후 절차

최종 선정되어 스마트기술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은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도입희망 스마트기술 선택 및 자부담 납부



* 상기 일정은 승인요청 서류 제출 현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
* 최종 선정 소상공인 대상 기술기업 선택 등 사업추진절차 및 방법 설명회 개최 예정

5. 유의 사항

- 신청서, 기술서 등 제출서류 상 **허위내용**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및 지원결정 취소, 국비지원금 환수 등의 **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**
- 제출한 서류가 **미비할 경우, 소진공에서 보완**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보완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 발생 가능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연락불능 등의 경우 **선정대상에서 제외**될 수 있음
- 최종 선정과정에서 **지원 규모는 일부 변경**될 수 있음
- 브로커, 기술업체 등의 **부당 개입 적발***시 사업 참여 배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**형사 처벌** 될 수 있음

* 사업 대리신청, 판매수수료(리베이트),페이백 지급, 끼워팔기 등

6. 문의처

구 분	전화번호	홈페이지 및 주소
중소벤처기업부	044) 204-7872, 7876	www.mss.go.kr "알림소식→새소식→사업공고"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	042) 363-7807, 7806, 7805, 7804	www.semas.or.kr "알림마당→공지사항"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, 대림빌딩 16층, 디지털전략실

7. 참고자료

- 【참고 1】 신청서 작성방법
- 【참고 2】 홈페이지 통한 신청 방법
- 【참고 3】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지원제외 업종
- 【참고 4】 모집공고 및 사업관련 주요 질의응답(Q&A)
- 【참고 5】 스마트기술 종류별 설명서
 - * 대표적인 스마트기술에 대한 설명자료 이므로, 희망하는 스마트기술 설명이 없는 경우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별도 확인 필요